

구미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01. 12. .

발 의 자 : 전인철의원

1. 제안이유

- 법률제6024호(1999년 9월 7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고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였음.
- 상위법이 제·개정되면 시군의 관련 조례도 개정되어야 하나, 아직 개정되지 않은 일부조례가 시행에 혼선을 주고 있으므로, 관련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일부조항을 금회 일괄 개정하고자함.

2. 주요골자

미개정 12개조례 일부조항의 내용 중

-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
-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개정.

3. 참고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제6024호)

구미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제1 조(구미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의 개정)

구미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중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한다.

제2조(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개정)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과기준 및 면제) 제2항 제1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제1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로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한다.

제3조(구미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구미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입원순위) 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하고, 제8조(보육료) 제1항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며,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한다.

제4조(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이용대상)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고, 제6조(이용료) 제1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한다.

제5조(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의 개정)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한다.

제6조(구미시수도급수조례의 개정)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공사비의 납부) 제1항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한다.

제7조(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의 개정)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유자대상) 제2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하고, 제3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한다.

제8조(구미시정조정위원회조례의 개정)

구미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결정사항) 제8호중 “생활보호법 제16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로 하고, “생활보호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제9조(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의 개정)

구미시공공시설내매점사용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우선허가) 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하고, “(거택보호대상 장애인 우선)”을 삭제한다.

제10조(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시설운영) 제1항중 “생활보호대상”을 “수급자”로 하고,

제9조(사용료) 제1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한다.

제11조(구미시민복지회관운영조례의 개정)

구미시민복지회관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교육비의 면제) 제2호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한다.

제12조(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생활복지국에 두는과) 제2항 제3호의 “생활보호”를 “생활보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